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18년 3월 23일

신한BNPP중국더단기증권투자자산신탁(H)[채권-재간접형]

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- 1. 클래스 신설(C-p, C-pe)
- 2. 환매수수료 삭제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클래스 신설(C-p, C-pe)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신설>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- 종류 C-p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/ (선취, 후취)판매수수료 부과여부 : 해당사항 없음 - 종류 C-pe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저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/ (선취, 후취)판매수수료 부과여부 : 해당사항 없음
1. 클래스 신설(C-p, C-pe)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7. <신설> 8. <신설>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7. 종류 C-p 수익증권 8. 종류 C-pe 수익증권
1. 클래스 신설(C-p, C-pe)	제39조 (보수) ③ <생략> 7. <신설> 8. <신설>	제39조 (보수) ③ <현행과 같음> 7. 종류 C-p 수익증권 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4.500] 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4.000] 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50] 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50] 8. 종류 C-pe 수익증권 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4.500] 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1.900] 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50] 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50]
1. 클래스 신설(C-p, C-pe)	제40조 (판매수수료)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 1~2. <생략> 3.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-e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, <신설> 종류 C-s 수익증권, 종류 C-w 수익증권, 종류 S 수익증권 : 없음	제40조 (판매수수료)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 1~2. <현행과 같음> 3.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-e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C-pe 수익증권 , 종류 C-s 수익증권, 종류 C-w 수익증권, 종류 S 수익증권 : 없음
2. 환매수수료 삭제	제41조 (환매수수료) ① <생략>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종류 A1, 종류 A2 : 없음 2. 종류 A-e, 종류 S : 30일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%,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% 3. 종류 C1, 종류 C-e, 종류 C-i, 종류 C-s, 종류 C-w :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% ③ <생략>	제41조 (환매수수료)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- 1. 클래스 신설(C-p, C-pe)
- 2. 환매수수료 삭제
- 3.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
- 4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
- 5. 위험고지문구 수정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클래스 신설(C-p, C-pe)	제1부,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신설>	제1부,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-p, 종류 C-pe
1. 클래스 신설(C-p, C-pe)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<신설>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신한BNPP중국더단기증권투자자산신탁(H)[채권-재간접형](종류C-p) 신한BNPP중국더단기증권투자자산신탁(H)[채권-재간접형](종류C-pe)
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,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6-나-(1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/ 11-가-(2)종류별 가입자격 / 13-가 <신설>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,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 기준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6-나-(1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/ 11-가-(2)종류별 가입자격 / 13-가 종류C-p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C-pe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

1. 클래스 신설(C-p, C-pe) 2. 환매수수료 삭제	11-나-(3) 환매수수료 / 13-나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. 종류 A1, 종류 A2 : 없음 2. 종류 A-e, 종류 S : 30일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%, 30일 이상 90일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% 3. 종류 C1, 종류 C-e, 종류 C-i, 종류 C-s, 종류 C-w :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%	11-나-(3) 환매수수료 / 13-나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	(3) 13-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신설>	(3) 13-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-p 수익증권 -판매회사보수 : 0.400% 종류 C-pe 수익증권 -판매회사보수 : 0.190%
3.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(모투자신탁 포함) -박재우(책임운용역), 임지윤(부책임용역)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(모투자신탁 포함) - 박하진 (책임운용역), 임지윤(부책임용역) - 최근현황경신(기준일: 2018년 2월 28일)
4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- 최근현황경신 (기준일: 2018년 2월 28일)
5. 위험문구 수정: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 <중국 본토채권 매매 차이 과세 위험>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QFII 및 RQFII를 통한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중국 본토 채권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 습니다. 따라서 중국 본토 채권 투자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, 세율, 적용시기,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. <u>향후 중국 과세당국의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중국본토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 본토 채권에 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게 됩니 다. 과세준비금은 매매차익의 경우 각 종목별 매매차익금액의 10%,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의 경우 각 종목별 평가차익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 및 적립하게 됩니 다.</u> <과세 준비금 유보 관련 위험>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 <중국 본토채권 매매 차이 과세 위험>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QFII 및 RQFII를 통한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중국 본토 채권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 습니다. 따라서 중국 본토 채권 투자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, 세율, 적용시기,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. <과세 준비금 유보 관련 위험> <삭제>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- 1. 클래스 신설(C-p, C-pe)
 - 2. 환매수수료 삭제
 - 3.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
 - 4. 위험고지문구 수정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클래스 신설(C-p, C-pe)	제1부, 수수료 및 보수 관련 <신설>	제1부, 수수료 및 보수 관련 - 종류 C-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- 판매회사보수 : 0.400% - 종류 C-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- 판매회사보수 : 0.190%
2. 환매수수료 삭제	제1부, 수수료 및 보수 관련 A1: 없음 / A-e, S: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,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% / C1, C-e: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%	제1부, 수수료 및 보수 관련 환매수수료 : 없음
3.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	제2부 I 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 (모투자신탁 포함) -박재우(책임운용역), 임지윤(부책임용역)	제2부 I 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 (모투자신탁 포함) - 박하진 (책임운용역), 임지윤(부책임용역) - 최근현황경신(기준일: 2018년 2월 28일)
4. 위험문구 수정	제2부 II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. 주요투자위험 <중국 본토채권 매매 차이 과세 위험>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QFII 및 RQFII를 통한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중국 본토 채권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 습니다. 따라서 중국 본토 채권 투자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, 세율, 적용시기,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. <u>향후 중국 과세당국의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중국본토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 본토 채권에 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게 됩니 다. 과세준비금은 매매차익의 경우 각 종목별 매매차익금액의 10%,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의 경우 각 종목별 평가차익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 및 적립하게 됩니 다.</u> <과세 준비금 유보 관련 위험>	제2부 II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. 주요투자위험 <중국 본토채권 매매 차이 과세 위험>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QFII 및 RQFII를 통한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중국 본토 채권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 습니다. 따라서 중국 본토 채권 투자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, 세율, 적용시기,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. <과세 준비금 유보 관련 위험> <삭제>